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821, 2822, 2823)

2025. 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 2821, 2822, 2823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 출 일 : 2025. 5. 26
- 다. 회 부 일 : 2025. 5. 29.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225,371백만원
- 징수결정액 : 235,901백만원
- 실제수납액 : 233,166백만원
- 미수납액 : 2,710백만원
- 결손처분 : 25백만원
- 다음년도 이월액 : 2,684백만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98.8%(전년도 99.4%)임.

〈2024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징수율 (C/B)
계	225,371	235,901	233,166	25	2,710	98.8%
세외수입	71,886	82,064	79,354	25	2,684	96.7%
경상적세외수입	40,991	35,784	35,433	-	351	99.0%
임시적세외수입	30,889	46,312	43,954	25	2,333	94.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5	△32	△32	-	-	100.0%
지방교부세	-	-	-	-	-	-
지방교부세	-	-	-	-	-	-
보조금	150,613	150,044	150,044	-	-	100.0%
국고보조금등	150,613	150,044	150,044	-	-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72	3,793	3,767	-	26	99.3%
보전수입등	2,872	3,793	3,767	-	26	99.3%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711,580백만원
- 예산증감 : 20,239백만원
- 예산현액 : 731,819백만원
- 지 출 액 : 706,173백만원
- 이 월 액 : 9,789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 989백만원
- 불 용 액 : 14,868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0%(전년도 3.3%)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4,868	1,083	75	216	960	12,534	-

〈 2024년도 시민건강국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년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불용율 (%)
총 예 산	731,819	706,173	9,789	989	14,868	2.0%
사 업 예 산 계	704,055	680,445	9,789	933	12,888	1.8%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수준 향상	43,280	41,734	8	178	1,360	3.1%
의약분야 관리 체계 구축	8,501	5,401	2,463	1	636	7.5%
시민건강수준 향상(스마트)	30,498	30,020	342	-	136	0.4%
시민건강수준 향상(건강)	155,387	155,037	-	5	345	0.2%
시민정신건강 수준 향상	124,110	121,169	575	325	2,041	1.6%
코로나19 대응 수준 향상	14,281	14,281	-	-	0	0.0%
생활보건 관리 향상	117,178	116,742	55	34	347	0.3%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향상	1,173	1,045	-	65	63	5.4%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18,149	17,618	-	163	368	2.0%
공공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133,709	127,370	1,999	-	4,340	3.2%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25,335	23,882	190	60	1,203	4.7%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9,286	8,703	-	-	583	6.3%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은평)	9,400	5,239	3,427	-	734	7.8%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서북)	13,768	12,206	730	102	730	5.3%
일 반 예 산 계	27,764	25,728	-	56	1,980	7.1%
행정운영경비	10,108	8,364	-	56	1,688	16.7%
재무활동	17,656	17,364	-	-	292	1.7%

- 가. 예산 이용 : 없음
- 나. 예산 전용 : 10건, 1,300백만원
- 다. 예산 이체 : 152건, 182,462백만원
-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4건, 4,873백만원
- 마. 예비비 사용 : 1건, 2,151백만원
- 바.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14건, 9,789백만원
 - 명시이월 : 4건, 5,901백만원
 - 사고이월 : 12건, 3,888백만원 (2건 명시·사고이월 모두해당)
- 사. 국고보조금 집행
 - 수령액 : 150,249백만원
 - 집행액 : 149,261백만원
 - 이월액 : 없음
 - 집행잔액 : 988백만원

3. 기금결산

- 기금조성현황

〈 2024년도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3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 = ① + ②
		계 ② = ③ - ④	조 성 액 ③	사 용 액 ④	
식품진흥기금	51,072	5,638	8,250	2,612	56,710

- 기금운용현황

〈 2024년도 기금운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계	24,321	계	24,321
용자금회수	4,807	용자성사업비	515
예치금회수	16,071	비용자성사업비	2,093
이자수입	2,247	기본경비	4
기타수입	1,196	예치금	14,709
		예탁금	7,000

4. 채권현재액 : 15,8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도말 현재액 ①	2024년말 현재액 ②	전년대비 증감 ③ = ② - ①
금 액	20,079	15,849	△4,230

5. 채무결산 : 8,2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채무종류	세부사업명	발행일	발행액	상환기간
지방채증권	서울의료원 권역응급 의료센터 건립	2021. 12. 07	8,200	5년거치 일시상환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4년도말 시민건강국 관리 공유재산
 - 건물 302,147.7 m^2 385,167백만원,
 - 토지 195,738.0 m^2 687,040백만원,
 - 기타 18건 4,079백만원,
- 총 1,072,207백만원 상당의 금액

〈 2024년도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4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계	1,642,771		570,564	1,072,207
행정 재산	계	1,457,573		878,407
	공용재산	1,265,005		705,845
	공공용재산	192,569		172,562
일반재산	185,198	8,602		193,800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4년도말 시민건강국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956개,
현재액 12,180백만원

〈 2024년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3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4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956	45	29	74	0	32	32	1,036
	금액	12,180	412	91	503	0	1,008	1,008	11,655
일반회계	수량	956	45	29	74	0	32	32	1,036
	금액	12,180	412	91	503	0	1,008	1,008	11,655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개요

-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54억원으로, 징수결정액(2359억 100만원) 중 27억 1000만원이 미수납되고, 2500만원이 정리보류액 되어 2332억원이 실제 수납됨.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 비율은 98.8%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수납률 보다 0.6% 감소함.

〈표-1〉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A-B)	수납률 (B/A)
2024년도	225,371	235,901	233,166	25	2,710	98.8
2023년도	248,567	256,007	254,378	10	1,619	99.4
2022년도	498,737	436,684	434,503	42	2,140	99.5

-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현액은 2254억원으로 직전회계연도 예산현액 2486억원 보다 232억원이 감소함.
 - 예산현액의 주요 감소사유는 ① 보조금(104억 300만원 감소), ② 보전수입등 내부거래(193억 8100만원 감소)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2〉 2024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주요 세입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3		2022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합 계	225,371	100.0	248,567	100.0	498,737	100.0
세외수입	71,886	31.9%	65,098	26.2	66,127	13.3
지방 교부세	-	-	200	0.1	850	0.2
보조금	150,613	66.8%	161,016	64.8	427,457	85.7
지방채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872	1.3%	22,253	8.9	4,303	0.8

나. 세입결산 검토의견

1) 세입 중 미수납액 관련

-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입결산 결과, 미수납액은 27억 10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미수납액 16억 1900만원보다 10억 9100만원이 증가함(표-1 참고).
- 미수납액의 경우, 주로 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17억 2500만원 발생), ② ‘지난연도수입’(5억 9300만원 발생)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3〉 2024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미수납액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발생사유
공유재산 임대료	118,331	111,960	83,953	28,006	(은평병원) 부설주차장 사용료 납부기한 미도래
기타사업수입	122,016	97,199	78,587	18,613	(공공의료과) 제대혈 사용 병원 비용 납부기한 미도래 및 수납지연
기타이자수입	691,563	2,211,110	1,907,005	304,105	(보건의료정책과 등)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정산 후 발생 이자액 반납지연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	19,160,850	33,683,547	31,958,870	1,724,678	(보건의료정책과 등)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정산 후 발생 집행잔액 반납지연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	3,099,068	4,989,264	4,973,384	15,880	(보건의료정책과 등) 민간위탁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지연
지난년도수입	1,514,788	1,536,620	918,552	592,627	(정신건강과 등) 소송판결에 따른 환수액 이차발생액 미납 등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287,800	1,581,203	1,555,200	26,003	(보건의료정책과 등) 지난년도 부과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납부 지연

2)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관련

- 「지방재정법」 제34조1)에서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고,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세입예산액을 보면, 세입예산액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예산은 1건 3천7백만원 발생함.

〈표-4〉 2024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실제 수납액(B)	과부족액 (B-A)	과부족 상세사유
부정이익 환수금	-	△37,337	△37,337	37,337	(식품정책과) 2020년 추진한 식품안전 영양교육 사업 보조금 부정 수급액 환수 ('24.12월)이후, 소송 패소에 따른 환수금 환급의 과오납 처리

1)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가. 세출결산 총괄 개요

-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6320억 1900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액된 예산현액은 7318억 1900만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7061억 73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97억 8900만원을 이월하였고, 9억 8900만원의 보조금이 반납되어 집행잔액은 148억 6800만원으로 나타남.
- 불용률은 2.0%로, 이는 직전회계연도의 불용률 보다 1.3% 감소함.

〈표-5〉 시민건강국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 비율 (B/A)
2024년도	632,019	731,819	706,173	9,789	989	14,868	2.0
2023년도	649,467	673,725	632,443	18,085	813	22,384	3.3
2022년도	1,130,216	1,172,863	982,550	18,179	18,129	154,005	13.1

나. 세출결산 검토의견

1)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관련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³⁾, 이용·이체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6〉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단위사업간	세부사업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2024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예산변경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예산전용 10건(13억원), 예산변경 24건(48억 7300만원), 예산이체 160건(1,830억 5300만원), 예비비 사용 1건(21억 5100만원)으로 나타남.

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4)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표-7〉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이용, 전용, 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이용	전용	변경	이체	예비비
전수	-	10	24	160	1
승인금액	-	1,300	4,873	138,053	2,151

가) 예산의 전용

-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5)에 따라 행정과목인 정책사업 내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10건, 전용금액은 13억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6건 감소하였으며 전용액은 직전 회계연도(7억 3600만원) 보다 5억 6400만원 감소함.

〈표-8〉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전용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7,769,040	28,000	0	11-28	841,040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자체)	0	0	28,000		840

- 5)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사무관리비	480,000	73,550	0	12-13	320,923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의료 및 회복비	1,069,550	0	73,550		
3	정신 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882,720	302,500	0	05-24	299,222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시설비	0	0	302,500		117,326
4	정신 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민간위탁금	932,120	49,400	0	05-24	299,222
		서울십리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0	0	49,400		
5	정신 건강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아이존) 운영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 보조	3,646,319	450,000	0	12-03	67,25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아이존) 운영	시설비	0	0	450,000		28,115
6	정신 건강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아이존) 운영	사회복지시 설법정운영 비 보조	3,196,319	50,000	0	12-03	67,25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아이존) 운영	자산및물품 취득비	0	0	50,000		1,489
7	감염병 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1,050,000	253,000	0	05-01	2,810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	6,480	0	253,000		94,678
8	감염병 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재료비	797,000	77,000	0	05-01	2,810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재료비	1,800	0	77,000		35,998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9	보건환경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868,389	6,603	0	12-18	23,513
		청사시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80,600	0	6,603		736
10	은평 병원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공공운영비	112,400	10,000	0	10-29	46,055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자산및물품 취득비	128,097	0	10,000		13,172

나) 예산의 변경

- 예산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
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
로,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24건, 변경금액은 48억
7300만원으로 나타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변경 건수는 2건 감소하였으며 변경액은
직전 회계연도(29억 8400만원) 보다 18억 8900만원 증가함.

〈표-9〉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보건의료 정책과	공공보건의료 역량강화	201-01 사무관리비	31,600	1,338	0	04-01	29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201-01 사무관리비	1,338	0	1,338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600,000	120,000	0	04-19	320,923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207-01 연구용역비	0	0	120,000		
3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7,900,000	98,800	0	08-14	841,040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95,200	0	98,800		
4	보건의료 정책과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7,801,200	32,160	0	08-28	841,040
		응급의료기관 지원	307-02 민간경상사 업보조	6,460,840	0	32,160		178,171
5	보건의료 정책과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163,400	27,500	0	12-13	70,727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99,817	0	27,500		25
6	스마트 건강과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2,500,000	2,500,000	0	11-11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301-14 기타보상금	23,184,000	0	2,500,000		
7	건강 관리과 (구.스마 트 건강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427,966	1	0	04-29	1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20,691	0	1		
8	건강 관리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4,914,670	61,945	0	07-25	77,109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439,532	0	61,945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9	건강 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고보조재원)	862,500	15,780	0	13,383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고보조재원)	702,618	0	15,780	
10	건강 관리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고보조재원)	97,500	5,524	0	4,735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국 고보조재원)	718,398	0	5,524	
11	건강 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30,000,000	617,000	0	09-03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150,000	0	617,000	
12	건강 관리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01-02 사회보장적 수혜금(취 약계층, 지방재원)	8,037,000	457,560	0	12-09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6,119,500	0	457,560	
13	정신 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05 민간위탁금	1,375,283	443,163	0	05-24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369,290	0	443,163	
14	정신 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01-01 사무관리비	415,500	4,500	0	08-20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01-02 공공운영비	250	0	4,500	
15	정신 건강과	지역정신건강복지 센터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12,132,743	4,800	0	10-17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585,600	0	4,800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6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307-05 민간위탁금	580,220	70,552	0	12-09	299,222
		지역 치매안심센터 운영(국비)	308-01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25,533,745	0	70,552		
17	감염병관리과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06-01 재료비	720,000	95,000	0	08-23	2,810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201-01 사무관리비	30,000	0	95,000		60
18	보건환경연구원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 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401-01 시설비	3,661,157	221,240	0	11-25	484,709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 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401-02 감리비	320,916	0	221,240		6,011
19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201-02 공공운영비	1,456,547	15,000	0	11-25	859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운영	201-03 행사운영비	44,700	0	15,000		2,528
20	어린이병원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45,000	3,880	0	10-23	25,218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24,900	0	3,880		122
21	은평병원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30,800	1,262	0	11-22	11,780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27,000	0	1,262		2
22	서북병원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307-01 의료 및 회복비	663,287	55,135	0	10-23	44,430
		서북병원 고객중심 약무서비스 제공	307-01 의료 및 회복비	983,000	0	55,135		7
23	서북병원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01-01 시설비	1,790,899	17,310	0	12-10	251,808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01-02 감리비	12,880	0	17,310		1,262

과 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일자	집행잔액	
조직	세부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4	서북 병원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90,000	4,039	0	10-23	66,435
		기본경비	204-01 직책급업무 수행경비	29,100	0	4,039		747

다) 예산의 이체

-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⁶⁾에 따라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총 160건, 이체금액은 1830억 5300만원으로 나타남.
 -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2제1항 개정(의료자원과 폐지(2024.1.1.), 감염병연구센터 폐지(2024.1.22.) 및 건강관리과 신설(2024.7.1.)) 등에 따라 예산을 이체하게 된 것임.
 - 참고로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이체 건수는 125건 증가하였고, 이체액은 직전 회계연도(508억 3700만원) 보다 1322억 1600만원 증가함.

6)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예산의 이용·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10〉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 이체 현황

(단위: 천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기본경비	국내여비	330,400	1,400	2024-01-08
	보건의료정책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162,000	1,400	
2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60,522	986	2024-01-08
	스마트건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4,968	986	
3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480	60	2024-01-08
	스마트건강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920	60	
4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0	5,000	2024-01-08
	스마트건강과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0	
5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0	95,000	2024-01-08
	스마트건강과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0	
6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0	5,000	2024-01-08
	스마트건강과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0	
7	여성가족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100,000	2024-01-08
	스마트건강과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8	디지털도시국 공간정보과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384,000	384,000	2024-07-08
	정신건강과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사무관리비		384,000	
9	보건의료정책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사무관리비	20,000	20,000	2024-01-23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사무관리비		20,000	
10	보건의료정책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기타보상금	4,000	4,000	2024-01-23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기타보상금		4,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1	보건의료정책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민간경상사업보 조	12,200	12,2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시설·운영관리 수준향상	민간경상사업보 조			12,200	
12	보건의료정책과	공중화장실 편의 개선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60,000	660,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편의 개선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60,000	
13	보건의료정책과	공중화장실 편의 개선	자치단체자본보 조	333,800	333,8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편의 개선	자치단체자본보 조			333,800	
14	보건의료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	5,000	5,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			5,000	
15	보건의료정책과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시설비	96,194	96,194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	시설비			96,194	
16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90,000	390,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90,000	
17	보건의료정책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	6,480	6,48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사무관리비			6,480	
18	보건의료정책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공공운영비	6,000	6,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공공운영비			6,000	
19	보건의료정책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재료비	1,800	1,8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재료비			1,800	
20	보건의료정책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	44,250	44,25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			44,250	
21	보건의료정책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00	2,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국내여비			2,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22	보건의료정책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재료비	4,000	4,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재료비		4,000	
23	보건의료정책과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운영	국제부담금	800,000	800,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 운영	국제부담금		800,000	
24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317,896	317,896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금		317,896	
25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47,675	47,675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서울형 독성물질 중독관리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47,675	
26	보건의료정책과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 조	1,005,000	1,005,000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자치단체자본보 조		1,005,000	
27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 조	561,272	561,272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서울시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	민간경상사업보 조		561,272	
28	보건의료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04,729	4,912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8,244	4,912	
29	보건의료정책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9,139	662	2024-01 -23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5,501	662	
30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2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사무관리비		20,000	
3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공공운영비	145,000	14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공공운영비		145,000	
32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560,000	56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56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33	보건의료정책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민간위탁금	69,412	69,412	2024-07-10
	건강관리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민간위탁금		69,412	
34	보건의료정책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1,760	371,760	2024-07-10
	건강관리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71,760	
35	보건의료정책과	재가암환자 관리(전환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7,683	217,683	2024-07-10
	건강관리과	재가암환자 관리(전환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7,683	
36	보건의료정책과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사무관리비	2,676	2,676	2024-07-10
	건강관리과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사무관리비		2,676	
37	보건의료정책과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280	26,280	2024-07-10
	건강관리과	만성질환 전문가 교육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280	
38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사무관리비	1,940	1,940	2024-07-10
	건강관리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사무관리비		1,940	
39	보건의료정책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610	12,610	2024-07-10
	건강관리과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610	
40	보건의료정책과	통합 방문건강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24,520	6,324,520	2024-07-10
	건강관리과	통합 방문건강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324,520	
41	보건의료정책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무관리비	108,645	108,645	2024-07-10
	건강관리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사무관리비		108,645	
42	보건의료정책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공무원 교육여비	40	40	2024-07-10
	건강관리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공무원 교육여비		40	
43	보건의료정책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금	250,000	250,000	2024-07-10
	건강관리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민간위탁금		250,000	
44	보건의료정책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717,774	29,717,774	2024-07-10
	건강관리과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9,717,774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45	보건의료정책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302,716	2,302,716		2024-07 -10
	건강관리과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302,716	
46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 시력보정용 안경지원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2,000	2,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어르신 시력보정용 안경지원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2,000	
47	보건의료정책과	어르신 시력보정용 안경지원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8,000	48,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어르신 시력보정용 안경지원 시범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8,000	
48	보건의료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 금	395,544	1,461		2024-07 -08
	건강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 금			1,461	
49	스마트건강과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0	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5,000	
50	스마트건강과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 조	95,000	9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초기 난임부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 조			95,000	
51	스마트건강과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5,000	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			5,000	
52	스마트건강과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비	100,000	10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비			10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53	스마트건강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국비)	사무관리비	101,940	101,940	2024-07 -10
	건강관리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국비)	사무관리비		101,940	
54	스마트건강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국비)	민간위탁금	400,000	40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국비)	민간위탁금		400,000	
55	스마트건강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국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458,169	3,458,169	2024-07 -10
	건강관리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국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458,169	
56	스마트건강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자체)	사무관리비	39,232	39,232	2024-07 -10
	건강관리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자체)	사무관리비		39,232	
57	스마트건강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자체)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10,000	1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금연도시 서울만들기(자체)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10,000	
58	스마트건강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 조	703,810	703,810	2024-07 -10
	건강관리과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 조		703,810	
59	스마트건강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무관리비	20,000	2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무관리비		20,000	
60	스마트건강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공공운영비	55,000	5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공공운영비		55,000	
61	스마트건강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914,336	914,336	2024-07 -10
	건강관리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914,336	
62	스마트건강과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민간경상사업보 조	1,148,288	1,148,288	2024-07 -10
	건강관리과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민간경상사업보 조		1,148,288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63	스마트건강과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180,634	1,180,634	2024-07 -10
	건강관리과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국비)				
64	스마트건강과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자체)	사무관리비	7,000	7,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자체)				
65	스마트건강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보 조	450,000	45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지원				
66	스마트건강과	스마트기기 활용학습을 통한 고도근시 및 망막 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연구용역비	98,489	98,489	2024-07 -10
	건강관리과	스마트기기 활용학습을 통한 고도근시 및 망막 관련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67	스마트건강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사무관리비	90,000	9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68	스마트건강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공공운영비	3,000	3,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69	스마트건강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행사운영비	1,440,000	1,44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70	스마트건강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국제화여비	6,000	6,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71	스마트건강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국제부담금	1,000	1,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건강도시 서울 기반 구축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72	스마트건강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891,625	6,891,625	2024-07 -08
	건강관리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891,625	
73	스마트건강과	지역사회 건강조사(국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311,393	1,311,393	2024-07 -10
	건강관리과	지역사회 건강조사(국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311,393	
74	스마트건강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자체)	사무관리비	10,000	1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지역사회 건강조사(자체)	사무관리비		10,000	
75	스마트건강과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00,000	30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00,000	
76	스마트건강과	건강증진사업관 리	민간위탁금	281,730	281,730	2024-07 -10
	건강관리과	건강증진사업관 리	민간위탁금		281,730	
77	스마트건강과	건강증진사업관 리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043,461	6,043,461	2024-07 -10
	건강관리과	건강증진사업관 리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6,043,461	
78	스마트건강과	비만예방 사업	사무관리비	129,500	129,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비만예방 사업	사무관리비		129,500	
79	스마트건강과	비만예방 사업	공공운영비	165,300	165,3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비만예방 사업	공공운영비		165,300	
80	스마트건강과	비만예방 사업	전산개발비	80,465	80,465	2024-07 -10
	건강관리과	비만예방 사업	전산개발비		80,465	
81	스마트건강과	비만예방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500,000	50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비만예방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500,000	
82	스마트건강과	음주폐해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5,000	4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음주폐해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45,000	
83	스마트건강과	신체활동 증진사업	사무관리비	40,000	4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신체활동 증진사업	사무관리비		40,000	
84	스마트건강과	신체활동 증진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50,000	25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신체활동 증진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50,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85	스마트건강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26,119,500	26,119,500	26,119,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전환사업)				
86	스마트건강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자체)	8,000	8,000	8,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자체)				
87	스마트건강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자체)	25,000	25,000	2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자체)				
88	스마트건강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1,427,965	1,427,965	1,427,965	2024-07 -10
	건강관리과	의료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89	스마트건강과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18,869	118,869	118,869	2024-07 -10
	건강관리과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90	스마트건강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120,692	120,692	120,692	2024-07 -10
	건강관리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91	스마트건강과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	37,500	37,500	37,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비 지원				
92	스마트건강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862,500	862,500	862,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93	스마트건강과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1,640,098	1,640,098	1,640,098	2024-07 -10
	건강관리과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94	스마트건강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684,500	684,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684,500	
95	스마트건강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97,500	97,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난청 조기진단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97,500	
96	스마트건강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7,780,500	7,780,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7,780,500	
97	스마트건강과	난임부부 지원(전화사업)	사무관리비	10,000	1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전화사업)	사무관리비		10,000	
98	스마트건강과	난임부부 지원(전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0,000,000	30,00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난임부부 지원(전화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0,000,000	
99	스마트건강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27,525	27,525	2024-07 -10
	건강관리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27,525	
100	스마트건강과	표준 모자보건 수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6,277	36,277	2024-07 -10
	건강관리과	표준 모자보건 수첩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36,277	
101	스마트건강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1,410,500	1,410,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국고보조재원)		1,410,500	
102	스마트건강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31,167	431,167	2024-07 -10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31,167	
103	스마트건강과	서울야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무관리비	5,000	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야기 건강 첫걸음 사업	사무관리비		5,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04	스마트건강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금	187,474	187,474	187,474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민간위탁금				
105	스마트건강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914,670	4,914,670	4,914,67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06	스마트건강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39,532	439,532	439,532	2024-07 -10
	건강관리과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07	스마트건강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무관리비	27,813	27,813	27,813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사무관리비				
108	스마트건강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765,000	1,765,000	1,765,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09	스마트건강과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 터	사무관리비	11,000	11,000	11,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 터	사무관리비				
110	스마트건강과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 터	공공운영비	159,700	159,700	159,7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 터	공공운영비				
111	스마트건강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무관리비	22,000	22,000	22,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사무관리비				
112	스마트건강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78,000	278,000	278,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13	스마트건강과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150,000	1,150,000	1,15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14	스마트건강과	난임·우울증상담 센터 설치운영	민간경상사업보 조	611,000	611,000	611,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난임·우울증상담 센터 설치운영	민간경상사업보 조				
115	스마트건강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250,000	250,000	25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16	스마트건강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00	1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00	
117	스마트건강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 지방재원)	8,037,000	8,037,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 지방재원)		8,037,000	
118	스마트건강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무관리비	1,500	1,5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무관리비		1,500	
119	스마트건강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00,000	100,000	2024-07 -10
	건강관리과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 금(취약계층, 지방재원)		100,000	
120	스마트건강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5,954	10,518	2024-07 -08
	건강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927	10,518	
121	스마트건강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 금	23,523	13,267	2024-07 -08
	건강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 금	1,461	13,267	
122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53,156	9,927	2024-07 -08
	건강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927	
123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6,163	2,646	2024-07 -03
	건강관리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2,646	
124	감염병연구센터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8,292	18,292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8,292	
125	감염병연구센터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4,800	4,800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4,800	
126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정보분석 및 대응인력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610,000	610,000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정보분석 및 대응인력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610,000	
127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5,000	5,000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	사무관리비		5,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28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8,000	8,000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감염병 정책 거버넌스 구축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8,000	
129	감염병연구센터	의료기관 등 감염예방 및 관리	사무관리비	300,000	300,000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의료기관 등 감염예방 및 관리	사무관리비		300,000	
130	감염병연구센터	감염병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250,000	250,000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감염병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공공운영비		250,000	
131	감염병연구센터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 금	265,363	265,363	2024-07 -02
	감염병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 금		265,363	
132	의료자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26,850	25,864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78,865	25,864	
133	의료자원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4,200	3,979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5,160	3,979	
134	의료자원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4,281,000	14,281,000	2024-01 -11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14,281,000	
135	의료자원과	병상 유지 및 관리	사무관리비	78,080	78,080	2024-01 -11
	감염병관리과	병상 유지 및 관리	사무관리비		78,080	
136	의료자원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986	986	2024-01 -11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47,258	986	
137	의료자원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221	221	2024-01 -11
	감염병관리과	기본경비	부서운영업무추 진비	5,280	221	
138	의료자원과	의약품소 유통 지도관리(국비)	사무관리비	19,604	19,604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소 유통 지도관리(국비)	사무관리비		19,604	
139	의료자원과	의약품소 유통 지도관리(국비)	국내여비	1,520	1,52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소 유통 지도관리(국비)	국내여비		1,520	
140	의료자원과	의약품소 유통 지도관리(자체)	사무관리비	6,500	6,5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의약품소 유통 지도관리(자체)	사무관리비		6,5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41	의료자원과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자체)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10,000	1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의약업소 유통 지도관리(자체)	시책추진업무추 진비		10,000	
142	의료자원과	안전망병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 조	120,000	12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안전망병원 운영	민간경상사업보 조		120,000	
143	의료자원과	안전망병원 운영	민간위탁금	164,000	164,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안전망병원 운영	민간위탁금		164,000	
144	의료자원과	의료기관개설위 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3,000	23,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의료기관개설위 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23,000	
145	의료자원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000	10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0,000	
146	의료자원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사무관리비	42,000	42,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사무관리비		42,000	
147	의료자원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기타보상금	1,000	1,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기타보상금		1,000	
148	의료자원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자산및물품취득 비	7,590	7,59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관리(전환사업)	자산및물품취득 비		7,590	
149	의료자원과	감염병 등 대비 시민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 등 대비 시민 건강능력 향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00,000	
150	의료자원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566,000	1,566,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566,000	

		과 목		예산액	이체금액		이체 승인 일자
조직	세부 사업	통계목	감액		증액		
151	의료자원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사무관리비	600,000	60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사무관리비			600,000	
152	의료자원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비	300,000	30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 비			300,000	
153	의료자원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시설비	2,612,800	2,612,8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시설비			2,612,800	
154	의료자원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감리비	22,600	22,6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감리비			22,600	
155	의료자원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의료 및 회복비	260,000	26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의료 및 회복비			260,000	
156	의료자원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민간경상사업보 조	60,000	6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민간경상사업보 조			60,000	
157	의료자원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50,000	45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자체)	자치단체경상보 조금			450,000	
158	의료자원과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72,200	172,2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무관리비			172,200	
159	의료자원과	유해약물 안전관리	민간경상사업보 조	91,000	91,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유해약물 안전관리	민간경상사업보 조			91,000	
160	의료자원과	경력단절 여성(간호조무사)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50,000	50,000		2024-01 -11
	보건의료정책과	경력단절 여성(간호조무사)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50,000	

2) 예비비 사용 관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7)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과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2024 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동부병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을 위하여 총 1건, 21억 5100만원의 지출을 결정하고 전액을 지출함.
- 직전회계연도와 비교하면 예비비 사용 건수는 17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직전 회계연도(60억 8000만원) 보다 39억 2900만원이 감소함.

〈표-11〉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세부사업명	지출 결정액 (a)	지출액 (b)	지출잔액 (a-b)	처리일자		예비비사유
					지출결정일자	지출일자	
1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2,151,000	2,151,000		11-20	11-20	동부병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

3)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관련

-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그 부

7)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경비”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경우 사고이월은 17건 38억 8700만원, 명사이월은 8건 59억 100만원으로 나타남. (1건 사고이월, 명사이월 중복)

- 사고이월은 예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도입된 제도이지만,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사고이월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의결 확정권을 침해할 수 있음. 사고이월은 예산편성시점부터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을 거쳤으나, 예산집행 중 계획된 예산이 회계연도를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시점부터 충분한 예산의 계획과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없었기 때문임.⁸⁾
- 특히 사고이월이 한 번 발생할 경우, 다음연도 본예산에도 영향을 미치며 연속적인 사고이월의 발생을 초래하기도 함.

〈표-12〉 이월 제도의 구분

구분	명사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자치단체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이월액확정 요구 (사업부서→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액확정 (예산부서)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의회의결 연장, 사고
이월금액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의 경우 예외	현금수반원칙, 단 기채사업인 경우 예외	당해연도 연부액만 현금수반

8) 민기 외(2017). 「예산결산심사 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표-13〉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예산의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시설비	2,612,800	280,000	280,000	2,332,800	'24.12월로 연내 공사비 일부 집행 불가할 것으로 판단, 시설비	명시이월
2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감리비	22,600			22,600	(2,333백만원) 및 감리비(22백만원) 이월	명시이월
3	지역사회기반 자살 예방사업 지원	연구용역비	150,000			150,000	'24.6월 추경편성 후 학술용역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함이 명백하여 명시이월 시행	명시이월
4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건립	시설비	5,495,000	191,324	191,324	1,495,000	실시설계 완료 후('24.5.) 총사업비 30% 증액으로 사전절차(타당성 재조사,	명시이월
5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건립	감리비	750,000			500,000	투자심사, 공심, 관리계획)가 물리적으로 연내 이행이 어려워 시설비	명시이월
6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건립	시설부대비	5,000	1,120	1,120	3,880	및 감리비 명시이월	명시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7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 진	시설부대비	17,917	5,000	5,000	12,900	'24.2월 마약관리센터 조성 결정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24.2.23. → '24.7.31.), 연내 공사비 등 일부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명시이월	명시이월
8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 진	시설비	3,777,156	2,392,827	554,371	1,384,329 1,838,456	시설비(1,384백만원) 및 시설부대비(13백만원) 명시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9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자체)	공공운영비	28,000	27,160	19,012	8,148	CPR서포터즈 앱 활성화를 위해 2024.12월 ~ 2025.5월 기간동안 유지보수 용역 계약 체결하여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사고이월
10	서울시 마약관리센 터 조성	사무관리비	406,450	85,527	37,512	48,015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연말(25.10.)에 긴급히 마약류 예방 교육영상 제작 용역 추진, 납기 미도래(~'25.1.) 및 센터 운영인력(센터장 등) 채용이('24.11월)에 완료됨에 따라, 실무진과 추가 협업을 통한 매뉴얼 개발 등 과업 수행이 필요하여 준공일 조정 및 계약기간 연장(~'25.2.)	사고이월
11	서울시 마약관리센 터 조성	연구용역비	120,000	120,000	60,000	60,000		사고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2	서울형 헬스케어 운영	사무관리비	1,768,000	1,711,884	1,671,884	40,000	참여자 모집 및 데이터 축적 후 효과성 분석을 위해 서울형 헬스케어 평가·분석 용역을 10월에 발주함에 따라 준공기간 미도래(25.8.)	사고이월
13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운영비	2,164,442	2,095,958	1,794,074	301,884	유지관리 사업 준공 검수를 진행하는 중, 업체에서 제출한 준공산물물에 대해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회계기한 내 보완 못하여 사고이월 함	사고이월
14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시설비	450,000	421,885	45,429	376,456	발달장애유형 신규아이존 확대 위한 유휴시유재산 건물 용도변경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에 따른 공사 소요비용 및 엘리베이터 구매비용으로 24.12월에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사고이월
15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지원시설(아이존)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48,511		48,511		사고이월
16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사무관리비	125,000	124,940	79,940	45,000	8.23예산 편성되어, 사업절차 지연으로 11.25 용역 수행업체와 계약 체결됨(입찰결과 2회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함) 향후 추진일정에 따라 6개월 이상 시일이 소요되어 사고이월이 필요함(25.5 준공예정)	사고이월

연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17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03,250	65,081	55,181	9,900	곤충의 대발생과 모기 활동기간 연장에 따라 매개곤충의 활동지표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감염병 매개곤충 활동지표 개발용역'을 '24년 11월에 긴급하게 발주하여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사고이월
18	생활 환경오염물질 검사	시험연구비	307,969	264,630	248,192	16,438	계약 대상자의 물품납품 지연으로 인한 이월 (2025년 2월 전체 집행 완료)	사고이월
19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 소 합동청사 건립	시설비	7,370,843	6,852,962	6,739,992	146,142	합동청사 건립공사 준공 및 이전이 12월로 지연됨에 따라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등의 연내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	사고이월
20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 소 합동청사 건립	감리비	542,156	536,146	509,156	26,990		사고이월
21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 진	감리비	273,500	273,500	82,050	191,450	'24.2월 마약관리센터 결정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으로 12월 공사 착공됨에 따라 공사비 및 감리비 일부 사고이월	사고이월
22	서북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	시설비	2,170,982	1,919,175	1,297,749	621,426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로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및 감리비 연내 집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고이월	사고이월
23	서북병원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 관리	감리비	35,040	33,779	4,850	28,929		사고이월

연 번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24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자산및물품취 득비	313,546	271,874	191,874	80,000	구매장비 제조사(미국 홀로직) 주요 부품공장의 자연재해 피해로 부품공급 차질에 따른 납품기한 연장(~'25. 3.)에 따라 사고이월	사고이월

4)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 불용액은 ① 회계연도중 재해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②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을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음.
- 2024회계연도 시민건강국의 불용액은 총 146억 7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불용액 발생규모가 1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28건, 122억 800만원으로 나타남.

〈표-14〉 2024년도 시민건강국 1억원 이상 불용사업

(단위: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지소 확충 지원	3,003,206	2,696,965	306,241	10.2%	보건지소 신규 확충 2개소(7억*2개소)로 공모하였으나, 신축 1개소 외 기존 보건분소의 보건지소 기능 전환 1개소(3억)로 집행 차액 발생
2	보건의료정책과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8,235,040	7,394,000	841,040	10.2%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사업종료에 따른 미집행
3	보건의료정책과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3,461,850	567,228	431,207	12.5%	서울시 은평병원(직영병원) 내 마약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편성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불용액 발생
4	건강관리과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운영	725,000	564,622	160,378	22.1%	국가일차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본사업으로 시행됨에 따라 유사·중복인 마일리지사업 자치구 참여율 저조 및 관련 행사 미시행
5	정신건강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8,871,884	8,462,274	305,211	3.4%	시설 종사자 인력변동 및 보건복지부 수요예측 오류 등으로 잔액 발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6	정신건강과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22,933,098	21,772,360	1,160,738	5.1%	정신재활시설 특성상 근무 환경 (야간근무 등) 및 여건(보수) 불만족에 따른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잔액 발생
7	정신건강과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4,511,250	4,069,250	221,000	4.9%	민간정신의료기관 정신응급병상 확대(4병상)를 위해 추가 모집공고(재공고 포함 2차례) 하였으나 지원기관이 없어 불용액 발생
8	정신건강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시설(아이존) 운영	4,019,319	3,460,207	134,145	3.3%	중사자 인건비잔액, 낙찰차액 등
9	정신건강과	국고보조금 반환	817,216	689,466	127,750	15.6%	사업종료(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에 따른 정산 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액 발생
10	감염병 관리과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388,530	241,193	147,337	37.9%	해외직구제품 안전성 검사 수수료 50% 감면됨에 따라 당초 예산편성액 대비 비용 절감 등
11	감염병 관리과	국고보조금 반환	15,279,420	15,115,843	163,577	1.1%	국고보조금 반환절차 지연 등으로 불용액 발생
12	식품정책과	농수산물 수거 검사(자체)	2,254,113	2,020,268	233,845	10.4%	시료검사기관(보건환경연구원 강남검사소)의 사무실 이전으로 검사업무 중단(1개월), 시료검사 재료비 불용액 발생
13	식품정책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	1,471,668	1,219,793	100,751	6.8%	우유급식비 지원 대상자수가 줄어들어 불용액발생
14	공공의료과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	6,250,000	192,444	4,058,676	64.9%	명시이월 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4,250백만원 중 설계용역비 전액 지출(191백만원)하고 사전절차(타당성, 투심등) 이행으로 연내 공사, 감리 계약 어려워 잔여 집행잔액 4,059백만원(공사비 3,809백만원, 감리비 250백만원) 발생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15	공공의료과	강남세곡 노인전문병원 (공립요양병원 BTL사업)	1,826,500	1,704,500	122,000	6.7%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1522('24.6.7.) 확정 예산 감액 변경 통보로 불용 발생
16	보건환경 연구원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	3,957,243	3,831,620	119,133	3.0%	대기측정망 및 모델링 운영 관련 용역 및 장비 및 부품구매 계약 낙찰 차액
17	보건환경 연구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4,164,835	4,024,134	140,701	3.4%	청사시설 유지관리 용역 및 강서지소 원상복구 공사(11백만원) 등 계약 낙찰차액
18	보건환경 연구원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8,366,551	7,689,982	503,437	6.0%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공사 준공정산 감액에 따른 공사비 집행잔액 등
19	보건환경 연구원	기본경비	2,592,565	2,327,630	264,935	10.2%	코로나 이후 감소된 출장업무 감소 유지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도시가스요금 예산액 대비 과소 부과로 집행잔액 발생 등
20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891,275	610,180	281,095	31.5%	의료장비(로봇보조정형운동장치-착용형) 기부확보 및 낙찰차액 발생
21	어린이병원	기본경비	1,741,004	1,435,152	305,852	17.6%	도시가스 요금 동결 및 사용량 감소로 연료비 집행잔액, 출장비 집행잔액 등
22	은평병원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관리	1,353,378	1,032,501	320,877	23.7%	2024년 2월 경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입원 제한 및 외래 초진 중단으로 진료 환자 감소로 인한 집행률 부진
23	은평병원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1,542,950	1,350,981	191,969	12.4%	지속적인 입원환자 감소로 약제비 지출 감소해 집행잔액 발생
24	은평병원	기본경비	1,461,179	1,215,702	245,477	16.8%	입원환자 감소 등으로 인한 가스 사용량 감소로 도시가스요금 집행잔액 및 코로나19 이후 국내여비 집행잔액 등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상세사유
25	서북병원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5,608,803	5,463,746	145,057	2.6%	시설물 용역위탁 처리비 편성 시 예상된 계약물량 이 실제 적게 처리됨에 따 른 집행잔액 등
26	서북병원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 스 수준 관리	4,413,760	3,446,711	316,695	7.2%	재직직원 인사변동(전출, 휴직 등)에 의한 특정업무 경비 집행잔액 및 방수공 사, 동력분전반 제작구매 및 설치사업 등의 낙찰차 액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27	서북병원	서북병원 결핵관리사업 (국비)	275,426	71,350	102,038	37.0%	결핵진담 간호사 보수 편 성기준(3명) 대비 실제운 영(1명), 결핵과 전문의 등 인력채용 부족에 따른 결핵사업 추진의 어려움으 로 집행잔액 발생
28	서북병원	기본경비	3,186,938	2,429,898	757,040	23.8%	도시가스 요금단가 인하 및 사용량 감소에 따른 집 행잔액 발생 및 출장업무 축소 및 불요불급한 출장 비 절감으로 잔액 발생

3 기금 결산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라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1989년에 설치되었음. 전년도말 조성액은 510억 7200만원이었으나, 당해연도 조성액은 82억 50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6억 1200만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567억 1000만원임.

〈표-15〉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24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식품진흥기금	51,072	5,638	8,250	2,612	56,710

- 2024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과징금 등)’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출은 ‘예치금’, ‘예탁금’, ‘비용자성사업’, ‘융자성사업’, ‘기본경비’ 순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16〉 2024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계	24,321	계	24,321
융자금회수	4,807	융자성사업	515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이자수입	2,247	비용자성사업	2,093
기타수입(과장금 등)	1,196	기본경비	4
예치금회수	16,071	예치금	14,709
		예탁금	7,000

- 식품진흥기금은 각각 융자성사업 1개, 비용자성사업 12개, 행정운영경비 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4회계연도 기금별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17〉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항목별 사용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도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집행률
융자성사업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2,000	515	25.7%
비용자성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34	33	98.8%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교육비 지원	554	408	73.6%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85	178	96.3%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248	241	97.1%
	먹거리전략 식거버너스 운영 및 활성화	13	13	99.2%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운영 및 유지보수	303	275	90.9%
	식품안전 전문교육	100	98	98.0%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414	404	97.5%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16	15	96.8%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영	55	55	99.6%
	서울시민 식품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사업	20	20	99.2%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53	353	100%
행정운영경비	기금관리비	5	4	70.0%

- 또한 민간 용자지원사업의 경우 시설개선자금은 10건 5억 1500만원을 용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표-18〉 2024년 식품진흥기금 민간용자지원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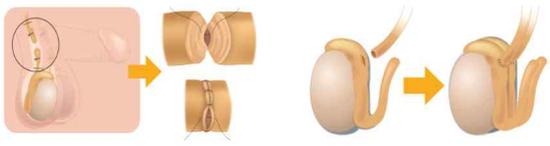
구 분	신청 현황		용자 집행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시설개선자금	25	1,547	10	515
합 계	25	1,547	10	515

1.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분석

가. 현황

-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이전에 영구피임 시술(정관·난관 절제술)을 받은 자가 다시 임신을 희망하여 정·난관 복원 수술을 받게 될 경우, 서울시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2024년도 신규사업임.

< 정·난관 복원 수술 >

구분	정관 복원 수술	난관 복원 수술
이미지	 <p><정관정관문합술> <부고환정관문합술></p>	
방법	◦ 안쪽의 점막과 바깥쪽의 근육층을 각각 연결	◦ 난관의 막힌 부분을 잘라내고 이어줌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정관문합술(R3893) ◦ 부고환정관문합술(R3894) ◦ 정관복원술(양측)(R38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관난관문합술(R4411) ◦ 자궁난관이식술(R4412)
본인부담금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80만원 ※ 23년 종합병원 일반환자 기준 약 74만원 	◦ 200~300만원
수술	◦ 임신을 위해 자른 정관을 연결하고자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관 수술한 사람이 임신을 원할 경우 ◦ 난관이 기형으로 막힌 경우 ◦ 난관 주위 복강에 유착 증상이 있는 경우

-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영구피임 시술을 받은 1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여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에 1억 원을 편성한 후 4399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4 회계연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4년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계	-	101,500	43,999	56,000
사무관리비		1,500	1,500	1,500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 계층, 지방재원)		100,000	43,999	56,000

나. 분석의견

첫째, 서울시는 동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 예산은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추경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⁹⁾가 있었음,

9)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회의록(2024년 6월 14일(금))

- 김경 위원 저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올해 쓸 수 있을까요? 올해 돈 쓸 수 있나요, 이거 추경에 올리셨는데?
- 시민건강국 추경 올리는 건 올해 본예산 반영하기에는 사회보장 협의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매년 정·난관 복원하시는 시민분들이 한 110명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자기부담금 지원이기 때문에 홍보를 충분히 잘하고 안내해드리면 다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 김경 위원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 시민건강국 저희가 올해 1월 1일 자로 수술받으신 분들까지, 작년에 이미 발표를 한 정책이긴 한데요 올해 1월 1일 자부터…….
- 김경 위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해서 100명 채울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 시민건강국 네.

- 하지만 서울시는 동 사업에 대한 발표는 이미 2023년도에 있었고 연말까지 100명을 다 채울 수 있다는 입장이었음,
- 그러나 서울시가 제출한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불용사유는 보건복지위원회 우려대로, “서울시 연평균 시술자 100명x1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어 49건 지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함¹⁰⁾.
- 또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가 제출한 2025년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지원인원은 총 2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서울시가 목표했던 지원인원(100명¹¹⁾) 대비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서울시‘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현황(2025년 5월말 기준 29명)>

연번	신청일	성별	연령	복원수술종류	지원금액	영구피임 수술연도	임신성공 여부
1	2025.01.02	남	32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0	시기미도래
2	2025.01.03	남	37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5	시기미도래
3	2025.01.05	남	41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4	시기미도래
4	2025.01.08	남	36	정관정관문합술	600,970	2020	시기미도래

10) 자료 : 2024년도 결산 요구자료 답변(시민건강국)

11) 자료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년도 본 예산안에 서울시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1억 150만원 편성(지원인원 100명)하여 제출했었음.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동 사업의 추진 실적이 부진하여 5천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25년도 최종예산: 51500천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안)

(단위 : 천원)

구분	25년 예산(안)	감액(안)	감액 사유 및 기타
합계	160,930,227	14,407,283	
27	정·난관 복원 시술비지원	101,500	50,000 ○(감액요청) △50,000천원 ▶올해 실적 감안하여 사업규모 축소

5	2025.01.13	남	47	정관정관문합술	492,120	2009	시기미도래
6	2025.01.14	남	32	정관정관문합술	811,940	2022	시기미도래
7	2025.01.20	남	48	정관정관문합술	366,410	2014	시기미도래
8	2025.01.31	남	26	정관정관문합술	330,250	2023	시기미도래
9	2025.01.31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383,880	2022	시기미도래
10	2025.02.01	남	28	정관정관문합술	440,440	2022	시기미도래
11	2025.02.06	남	40	정관정관문합술	256,600	2024	시기미도래
12	2025.02.13	남	53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04	시기미도래
13	2025.02.17	남	48	정관정관문합술	803,310	2017	시기미도래
14	2025.02.19	남	36	정관정관문합술	417,270	2019	시기미도래
15	2025.02.28	남	35	정관정관문합술	269,900	2021	시기미도래
16	2025.02.27	남	47	정관정관문합술	408,900	2021	시기미도래
17	2025.03.01	남	34	정관정관문합술	454,930	2014	시기미도래
18	2025.03.05	남	29	정관정관문합술	462,260	2018	시기미도래
19	2025.03.26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604,300	2023	시기미도래
20	2025.03.27	남	34	정관정관문합술	444,060	2023	시기미도래
21	2025.03.28	남	44	정관복원술(양측)	383,530	2015	시기미도래
22	2025.03.31	남	52	정관정관문합술	555,530	2005	시기미도래
23	2025.04.04	남	44	정관정관문합술	589,450	2008	시기미도래
24	2025.04.06	남	37	정관정관문합술	421,900	2019	시기미도래
25	2025.04.23	남	44	정관정관문합술	447,540	2013	시기미도래
26	2025.04.30	남	38	정관정관문합술	326,040	2019	시기미도래
27	2025.05.02	남	28	정관정관문합술	397,050	2024	시기미도래
28	2025.05.12	남	43	정관정관문합술	429,570	2025	시기미도래
29	2025.05.21	남	32	정관정관문합술	519,100	2022	시기미도래

- 이처럼 동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향후 서울시는 동 사업의 추진 일정 및 여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고, 아울러 보다 면밀한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 등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 문제와는 별개로, 2024년에 서울시가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각종 언론에서 아래와 같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관련 여론 >

발표기관	보도일시	보도제목
서울신문	2024.05.30.	"뉘은 거 푼다고 애 낳겠나"...정관 복원 지원금에 쏟아지는 비판
한국일보	2024.05.30.	저출생이 정자 문제?... 혈세 들여 정자 분석·정관 복원 지원한다니 '분노'
쿠키뉴스	2024.06.04.	정·난관 복원 지원 지자체...저출생 효과는 글썄

- 서울시의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을 통해 현재까지 1명이 출산을 하고 3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나, 동 사업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현황(2024년 49명)>

연번	신청일	성별	연령	복원수술종류	지원금액	영구피임 수술연도	임신성공 여부
1	2024.07.19.	남	35	정관정관문합술	825,610	2019	수술실패
2	2024.07.19.	남	31	정관정관문합술	768,020	2023	임신헌인
3	2024.07.25.	남	43	정관정관문합술	796,540	2018	미응답
4	2024.07.31.	남	33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임신시도중
5	2024.08.14.	남	48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6	임신시도중
6	2024.08.18.	남	32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0	임신시도중
7	2024.08.22.	남	38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1	미응답
8	2024.08.23.	남	27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임신시도중
9	2024.08.25.	남	37	정관정관문합술	910,400	2019	임신시도중
10	2024.08.26.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1	수술실패
11	2024.08.26.	남	41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0	출산함
12	2024.08.26.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9	수술실패
13	2024.09.03	남	42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9	미응답
14	2024.09.08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8	임신시도중
15	2024.09.10	남	34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9	임신시도중
16	2024.09.10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9	임신시도중
17	2024.09.11	남	43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7	임신시도중
18	2024.09.21	남	34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미응답
19	2024.09.23	남	26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0	임신시도중

20	2024.09.24	남	51	정관복원술(양측)	1,000,000	2003	임신시도중
21	2024.10.02	남	44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임신시도중
22	2024.10.02	남	53	정관정관문합술	989,190	2005	미응답
23	2024.10.02	남	37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임신시도중
24	2024.10.04	남	40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3	임신시도중
25	2024.10.04	남	29	정관정관문합술	568,840	2022	임신시도중
26	2024.10.21	남	40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임신시도중
27	2024.10.23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미응답
28	2024.10.23	남	2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미응답
29	2024.10.24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7	임신시도중
30	2024.11.02	남	43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6	시기미도래
31	2024.11.07	남	29	정관정관문합술	883,230	2020	임신시도중
32	2024.11.07	남	32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2	임신시도중
33	2024.11.11	남	42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0	미응답
34	2024.11.19	남	45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08	미응답
35	2024.11.20	남	42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1996	시기미도래
36	2024.11.21	남	43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1998	시기미도래
37	2024.11.22	남	35	정관정관문합술	356,660	2020	미응답
38	2024.11.25	남	47	부고환정관문합술	1,000,000	2009	시기미도래
39	2024.12.02	남	42	정관정관문합술	301,000	2018	임신확인
40	2024.12.08	남	37	부고환정관문합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41	2024.12.08	남	35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42	2024.12.11	남	41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6	임신시도중
43	2024.12.13	남	33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44	2024.12.20	남	43	정관정관문합술	382,070	2023	시기미도래
45	2024.12.25	남	33	정관정관문합술	171,850	2017	임신확인
46	2024.12.26	남	44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19	시기미도래
47	2024.12.26	남	43	정관정관문합술	413,330	2019	시기미도래
48	2024.12.26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632,670	2019	시기미도래
49	2024.12.27	남	39	정관정관문합술	1,000,000	2020	시기미도래

2.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 분석

가. 현황

-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은 야간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한 「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 및 야간 상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
-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서울시는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2개소 운영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그중 2800만원을 CPR서포터즈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전용하고, 1억 3096만원을 변경(①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 확정에 따라 매칭 시비 예산 확보에 3216만원, ② 우리아이 안심의원 2개소 증가에 따른 예산 변경에 9880만원)한 후 배정받은 8억 4104만원을 전액 불용하였음.

<2024 회계연도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전용	변경	배정액	집행액	불용액
계	8,295,200	-28,000	-32,160	8,235,040	7,394,000	841,040
민간경상사업보조	7,900,000	-28,000	-130,960	7,741,040	6,900,000	841,040
우리아이 안심병원 8개소 운영	4,800,000			4,800,000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 운영	2,100,000			2,100,000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2개소 운영	1,000,000	-28,000	-130,960	841,040	0	841,04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95,200		+98,800	494,000	494,000	0
우리아이 안심의원 8개소 운영	395,200		+98,800	494,000	494,000	0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실집행이 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2024년에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사업 준비과정에서, 관련 제도 추진(복지부 유사 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함.

- 서울시는 2023년부터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2개소 모집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지원은 저조하였음¹²⁾.

<2023년 당시 우리아이 안심의료기관 및 야간 상담센터 운영계획 대비 모집 현황>

1) 의료기관별 운영 계획 대비 모집 현황				
○ 선정기관 현황				
구분	사업명	운영계획(개소)	선정(개소)	미달(개소)
1차 의료기관	우리아이 안심의원	8	8	0
2차 의료기관	우리아이 안심병원	8	6	2
3차 의료기관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	3	0
야간 상담센터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2	1	1

※ 자료 : 시민건강국 행감요구자료 30번(p496)

- 이에, 서울시는 총 3차례에 걸쳐 모집공고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마침내 목표한 2개소(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를 어렵게 모집할 수 있었음.
- 그런데 위 모집된 2개 의료기관 모두 신규의사 채용 곤란,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2023년도에 보조금 5억원을 전액 자진 반

12) 자료: 서동준 기자, 2023.09.11., “응급의학과 의사 있어도 소아과 없어 '무용지물' 서울시, 야간 소아응급진료 병원 모집 난항... '6개월 3억 지원' 효과 무(無). 출처 :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02035

남13)한 사례가 있었음.

<’23년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제목 세외수입 징수결의(’23년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2023년 서울시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운영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분을 아래와 같이 징수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내역

- 사업명 : 2023년 서울시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운영사업
- 부과연월 : 2024. 2.
- 부과건수 : 4건
- 부과금액 : 502,175,880원
- 부과내역

(단위: 원)

세목명	납세자명	총금액	부과금액
[시일반] 시비보조금등 반환수입	기쁨병원	250,000,000	250,000,000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250,000,000	250,000,000
	소계	500,000,000	500,000,000
[시일반] 기타이자수입	기쁨병원	1,551,230	1,551,230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624,650	624,650
	소계	2,175,880	2,175,880
총계		502,175,880	502,175,880

※ 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사업운영 불가로 보조금 전액 반납

※ 자료 : 보건의료정책과-7733(2024.3.3.) 세외수입 징수결의(’23년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 이에 동 사업은 지난 「2023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결산 승인안」 회의(2024. 6. 14.)¹⁴⁾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논의

13)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3차(2023. 4. 29.) 회의록

- 김정 위원 : 야간·휴일 소아의료 인프라 확대 관련해서 우리아이 안심 진료기관 확충에 대한 달빛어린이 집 아까 말씀 주셨는데 안심병원 그리고 전문응급센터, 야간상담센터 이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시민건강국 : 상담센터로 2023년도에 기쁨병원하고 연세곰돌이소아과의원이 선정됐는데 상담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신규 채용이 안 돼서, 의사 채용이 안 돼서 보조금을 자진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14)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2차 회의(2024. 6. 14.) 회의록

- 김영옥 위원 국장님,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에서 회계 작년도 거 결산을 보면 서울시는 2023년 추경예산

와 면밀한 집행계획 없이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하여 실집행이 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향후 사업 수행 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그런데 서울시가 제출한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불용사유는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사업종료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함¹⁵⁾.
- 위 ‘불용사유’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수립한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사업 변경(종료) 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의료 환경 변화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약화되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는 의견임(다음 페이지 참조).

을 통해 응급의료기관 지원 그래서 39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액 집행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집행을 하고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시민건강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일단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 다 교부는 했지만 그 병원에서 집행이 다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 김영옥 위원 왜요?
- 시민건강국 일부 병원에서는 의료인을 확보하지 못했구요. 의사분 채용을 못 해서……. 그리고 시기가 좀 늦어져서 늦게 교부한 원인도 있었고요 의료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 김영옥 위원 이게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사업을 실행하려고 준비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이 예산을 추경에 투입하려고 계획을 해서 넣어놓으신 금액 아닙니까?
- 김영옥 위원 금액이 39억 5,000만 원이나 되고요.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지금 시립병원 원장님들 다 나와계시는데 충분히 논의는 된 상황입니까? 이런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의료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충분히 병원하고는 인력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구조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확보한 거고 사업을 하시려고 노력하셨냐고요?
- 시민건강국 위원님 아시지만 소아분야의 필수과목은 의료대란 이전부터도 굉장히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 김영옥 위원 그러니까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죠. 금액도 40억이나 가까이 되는 예산을 지금 보니까 거의 불용이고요, 반납한 상태고요. 이렇게 하는 사업은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대상으로 하고 야간진료를 우선순위로 해서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럼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갖다 넣은 예산인데 이걸 집행을 못 했는데 이해하시라 그리고 이게 선생님들을 못 구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책임이 없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 시민건강국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인정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특히 추경편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5) 자료 : 2024년도 결산 요구자료 답변(시민건강국)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사업 변경 계획(2024. 8.)>

2 추진 경과

- '23년 추경예산 확보('23.7.5.) : 5억원 (기관당 2.5억원)
-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공모계획 수립('23.7.31.)
- 1차 공모('23.8.16.) : 기쁨병원 선정('23.9.11)
- 2차 공모('23.9.13.) : 성애병원 접수 후 심의회 불참으로 미선정
- 3차 공모('23.10.30.) : 연세공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 선정('23.11.22)
- 선정기관(2개소) 지정 자진 반납('23.12.29.)
 - 산부인과 채용 곤란, 인건비 상승 등의 사유로 운영 어려움 (사업비 찬여 반납)

3 사업추진 필요성 검토 결과

- 보건복지부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개 권역) 운영 계획 발표
 -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대책('23.9.22)으로 '24년부터 「24시간 소아상담센터」 (5개 권역) 운영 예정
 - 아이가 아플 때 응급 및 야간 휴일 의료기관 안내 등 전화로 상담
 - 구급상황관리센터(119) 5개 권역(서울 포함)에 간호사 인력 추가하여 상담 예정
 - 의사(1-2명)는 중앙상황실에 근무하면서 총괄 관리 및 지원 역할 예정
-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 모든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 확대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개정('24.2.23)으로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가능
 - 상담센터는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던 소아 환자에 대하여 단순 의학적 상담만 가능
 - 비대면 진료는 다-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 및 처방이 가능하므로 만족도가 높음
- ▶ 보건복지부 사업과 중복을 피하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에 따른 의사 인력 부족, 비대면 진료 확대 등 의료 환경 변화로 사업 추진 필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자료 : 보건의료정책과-25513(결재일자 2024. 8. 8.)

-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운영계획에 대한 발표가 지난 23년 9월에 있었고, 의사 집단행동 관련 「비대면 시범사업 지침 개정」 이 24년 2월에 있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운영 사업 예산'의 감액 검토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동 사업은 2023회계연도에 사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실행이 되지 못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2024년에 우리아이 야간상담센터 사업 준비과정에서, 관련 제도 추진(복지부 유사 사업,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변화하는 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고 연례적인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함.
- 향후 서울시는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관련 제도 추이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동 사업과 같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가. 현황

- ‘서울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모자보건법」 제10조의5 및 제11조의4에 근거하여 난임부부, 임산부 등에게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의료적 개입 지원을 제공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임.
- ’25년 6월 기준, 서울시 내 총 2개의 ‘권역별(서울권역, 서남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민간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음.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개정(’24.1.2.) 및 시행(’25.1.3.)으로 인해, 현재 동 센터의 공식 법적 명칭이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로 변경되었음.

서울특별시 권역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현황 (2개소)			
1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3.7.31 개소)	강남상담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민간보조사업)
		송파구지역상담센터	
2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4.9.27. 개소)	보라매상담센터	보라매병원 (민간보조사업)
		금천구지역상담센터	

- 아울러,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지난 ’24년 본예산에 ‘서울권역 센터’ 운영을 위해 약 3억 3천8백만원 (국비 1억1천9백만원 포함)이 편성되었음.
- 그 후,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 ‘서남권역 센터’를 추가 설치하기 위해 약 2억7천3백만원 (국비 1억1천9백만원 포함)이 편성되었음.

○ 즉, 최종적으로 2개의 센터 관련 2024년 총 예산이 6억1천1백만원 (국비:238,000천원, 시비:238,000천원 및 추가 시비 지원 135,000천원) 편성 되었음.

▶ (서울권역 센터) 국비(50%) 약 119,000천원, 시비(50%) 약 119,000천원 매칭 및 *추가 시비 지원 (약 1억원) = 약 338,000천원

※ ‘송과지역상담센터’ 2명 인건비 100,000천원,

▶ (서남권역 센터) 국비(50%) 약 119,000천원, 시비(50%) 약 119,000천원 매칭 및 *추가 시비 지원 (약 35,000천원) = 약 273,000천원

※ ‘금천지역상담센터’ ‘임차보증금 및 시설공사’ 35,000천원

<2024 회계연도 ‘권역별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2024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증액			
권역별 난임·우울증상 담센터 설치·운영	(x119,000 338,000	(x119,000 273,000	(x238,000 611,000	(x238,000 611,000	-

나. 분석의견

○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23년 1월 10일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국고 보조금 사업 공모’ 관련 공문을 접수¹⁶⁾한 후, '23년 1월 13일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계획」¹⁷⁾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에 ‘서울특별시’와 함께 참여할 ‘수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계획하였음.

16) 스마트건강과-476, 2023년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공모 및 선정계획 알림 (23. 01. 10.)

17) 스마트건강과-720,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계획 (23. 01. 13.)

- 왜냐하면, 보건복지부의 '동 권역별 센터 설치 관련 국고보조금 공모 사업' 절차가 '신속한 권역별 상담센터 개소'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 때문임.

(기존) ① 국고 보조금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후 ② 선정된 지자체가 '수탁기관' 선정 방식
 (변경) ① 지자체가 먼저 수탁기관을 선정한 후 ② 함께 '국가 보조금 공모 사업' 참여

- 그리고 서울시는 '23년 1월 18일 "2023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 '공고문18)'을 게시하고 '23년 2월 14일 '서울시'와 함께 '동 보건복지부 센터 국고보조금 사업'에 참여할 '수탁기관'을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근거하여 '서울시 자체 선정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음.

2023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	
1. 공 모 명 :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2. 사업기간 :	공모 선정 후 협약일 ~ 2025.12.31.(예정)
※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가능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기관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관
<p>▶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p> <p>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p> <p>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p>	

- 그 후, 서울시는 '23년 2월 17일, '동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공모 신청 사업계획서'를 제출¹⁹⁾하였고, 최종적으로 '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동 국고 보조금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는 공문을 접수²⁰⁾하였음.

18)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23-158호 "2023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

19) 스마트건강과-2980, 2023년 보건복지부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공모 추천기관 사업계획서 제출(서울시) (23. 02.17.)

- 그리고 '23년 6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금 공모사업에 함께 참여한 기관'과 '보조금 사업 협약'('23. 6. 2. ~ '25. 12. 31.)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23년 7월 말 '동 상담센터'를 개소 하였음.
- 그런데, '동 서울시 센터'는 '중앙 센터 및 타 지자체의 '권역별 센터'가 모두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근거해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된 것에 반해, 유독 '민간 정상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었음.

〈2024년 시민건강국 예산 사업설명서 p. 374 참조〉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민간정상사업보조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238,000,000원 = 238,000천원	○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338,000,000원 = 338,000천원
	증감사유	
본사업은 국비 시비 50:50 배칭사업으로 서울권역 1개소 인력 3명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서울시는 강남상담센터와 송파 지역상담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있어 추가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위해 자체시비 반영		

《전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사업방식 및 인력 현황²¹⁾》

연번	시도	센터명	수탁기관 (사업방식)
1	중앙	중앙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18. 6.20)	국립중앙의료원 (민간위탁)
2	전남	전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18.12.26.)	현대여상이동병원 (민간위탁)
3	인천	인천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1. 1.29.)	아인병원 (민간위탁)
4	대구	대구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19. 2.28.)	경북대학교병원 (민간위탁)
5	경기	경기도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1. 2.23.)	인구보건복지협회 (민간위탁)
6		경기북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3.10. 5)	동국대일산병원 (민간위탁)
7	경북	경상북도 권역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1.10.28.)	안동의료원 (민간위탁)
8		경북서부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24.9.5.)	김천의료원 (민간위탁)
9	서울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3.7.31)	강남상담센터 송파구지역상담센터
10		서울 서남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24.9.27.)	보라매상담센터 금천구지역상담센터
			강남세브란스병원 (지방보조사업)
			보라매병원 (지방보조사업)

20) 스마트건강과-5215 |2023년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공모 지자체 선정결과 알림 (23. 03. 23.)

21) “서울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서 (p.9) 참조

- 이러한 ‘보조금 방식’의 ‘권역별 센터’ ‘운영 체계’는 ‘23년 당시 적용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 및 그 당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2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 안내’(p.8~p.9)에서 명시하고 있는 ‘운영 체계 (직영 또는 위탁(공모 또는 지정))’와 맞지 않고 이례적임.

모자보건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2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 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u>시·도지사</u> 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u>위탁</u> 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시행 2023. 2. 10.] [보건복지부령 제937호, 2023. 2. 10., 일부개정]
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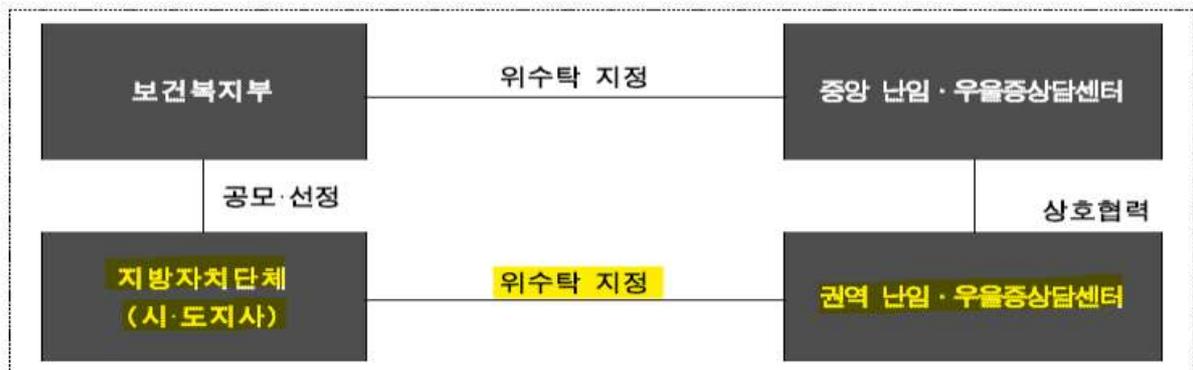
- 「모자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 법문언을 살펴보면, ‘동 권역별 센터’의 ‘설치 권한 주체’는 ‘서울특별시’이며, ‘설치 여부’ 역시 서울특별시장의 재량임. 그리고 ‘서울특별시’는 ‘권역별 동 센터’를 직접 ‘직영’하게 하거나 아니면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에게 ‘위탁’을 할 수 있음.

- 아울러, 동 보건복지부의 사업 안내 (p.8)에서도 동 법령의 취지에 따라 ‘센터의 운영 형태’를 ‘직영’ 또는 ‘위탁(공모 또는 지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아래 [표] (p.9)에서는, (다) ‘권역별 센터’의 ‘공모 또는 지정’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며, 나아가 ‘수탁기관 공모 선정’에 대해서는 ‘지자체 조례’ 등 지자체 여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서울시는 ‘직영’이 아닌 ‘위탁’ 방식으로 동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민간 위탁’ 관련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

〈2022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 안내 P.9 참조〉

-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공모 또는 지정 위탁함
-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 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운영할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를 선정함.
- 다)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는 공모 혹은 지정을 통하여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선정
 ※ 공모선정에 관하여는 시·도 조례 등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함

2) 기관별 역할



- 이에 더해,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동 센터의 ‘보조금 사업 협약체결(’23.6월)’을 위해 사전에 ‘법률 자문’ 받은 ‘2023년 서울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업무 협약 관련 법률자문 결과²²⁾’에서도 ‘동 권역별 센터’의 운영 방식은 관련 법령인 ‘모자보건법령’ 상 ‘민간위탁 사무’로 봄이 상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음.

22) 스마트건강과-8448, (2023. 5. 23.)

- 그리고 이에 따라, ‘법률 자문’ 의견에서는 향후 ‘동 센터의 보조금 협약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동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 하였음.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권고(‘23.5.19.) 〉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제2항, 동법 동조 제3항에 따라 협약의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운영 사무는 서울시 사무로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로 봄이 상당함. 본 협약기간 종료 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하시기를 권고

- 그런데,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동 권역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직영’도 ‘민간위탁’도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하였음. 하지만, 실제 ‘센터 운영 기관 모집’ 관련 ‘공고문 세부내용’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23년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 보고’ 등에서는 ‘이와 다르게 ‘위탁’이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공고문)

- ▶ 센터를 운영할 ‘기관 모집 공고문’에 ‘위탁기관의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공모’에 신청이 가능한 ‘기관’의 ‘자격요건’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상의 ‘민간위탁’ 근거 조문으로 명시하고 있음.
- ▶ ‘공고문’ ‘5. 사업 내용’에서도 “기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운영 등”을 그 사업 내용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음. 즉, ‘센터 모집 공고문’에서 “동 센터의 사업 내용은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체계(직영 또는 위탁 체계)”에 따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음. 그러나, 유독 ‘예산 편성 체계’는 ‘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안내’를 따르지 않았음.

(제2023-158호) 2023년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공모

1. 공 모 명 :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운영기관
2. 사업기간 : 공모 선정 후 협약일 ~ 2025.12.31.(예정)
 - ※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기간 갱신 가능

5. 사업내용

-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및 난임환자, 임신부, 양육모 심리 상담, 정서적지지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운영 등**

6.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기관으로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기관

-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법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1.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사업계획서)

- ▶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보건복지부의 권역별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공모 사업'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서울권역'에 설치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운영 방법을 **'위탁운영'**이라 명시하고 있음. 아울러, '23년 2월 공모 당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서울권역 센터' '재정조달계획'**에도 **'운영 형태'**를 **'민간위탁'**이라 명시하고 있음.

3.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
 - 시 설 명 : 서울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 운영방법 : **위탁운영(강남세브란스병원)**
 - 개 소 : '23.7.31.(강남 지역 2개소)

2. 재정조달계획

- 운영형태 : **민간위탁**, 서울시 업무협약체결
- 재정조달 : 민간경상보조, 23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 **2023년** (본예산) 시비 119백만원 확보함

- ▶ 아울러, 추가적인 '서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출한 '재정조달계획'에도 분명히 '서남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의 운영 형태를 '민간위탁, 서울시 업무협약체결'이라 명시하고 있음. 그리고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절차가 '서울시가 수탁기관 선정 후 함께 참여'하는 방식임에 따라, 동 '계획서'의 제출 시점에서는 이미 서울시가 동 센터 운영 기관'의 운영 방식 및 운영 기관을 확정된 후 '복지부'에 제출한 것임.

2. 재정조달계획

□ 운영형태 : 민간위탁, 서울시 업무협약체결

□ 재정조달 : 민간경상보조, 23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24년 시비 119백만원 추경 확보 예정

- (지도점검)

- ▶ 서울시 시민건강국은 '23년 동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를 지도점검한 결과보고서에서, '지방보조금법령' 등이 아닌 '민간 위탁' 관련 '조직담당관'의 공문 「2023년 하반기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실시 관련 안내 (조직담당관-11656)」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

'23년 하반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지도점검 결과보고

'23년 하반기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후 결과 보고함

1. 관련 근거

- 서울시 조직담당관-11656(2023.10.27.)호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 서울특별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업무 협약서 제9조(지도·감독) 조를 근거로 삼고 있음.

▶ 아울러, 시민건강국의 「25년 서울시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운영지원 수정 계획」(p.10)에서는 “상담센터(보조사업) 방문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내용’에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도점검 리스트 준용 (위탁사무의 일반 운영 및 운영 성과 등)”라고 명시하고 있음.

- 즉, 동 센터 지도·감독은 ‘보조금 사업 지도·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관리지침 지도점검 리스트’를 준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그 ‘점검 내용’으로 ‘위탁 사무의 일반 운영 및 운영 성과’를 명시하고 있음. 다시 말해, ‘위탁 기관의 장’이 ‘자신의 사무를 위탁한 ‘수탁기관’에 대해 가지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지도 감독권’을 사실상 동 사업에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2추5125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생략)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으로써 수탁사무가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여기에는 위법성 판단은 물론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이하 “생략”)

- 이에 더해, ‘서울시’와 동일한 형태의 ‘보건복지부 국비 보조금 공모 사업’에 참여한, 타 지자체 (경상남도)('25년 3월 최종 선정) 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최종 선정('25.3.13.)에 따라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 센터 신규 국비 보조 사업 추진을 위해,
- '24. 4월 24일 ‘신규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²³⁾’을 '25. 5. 15.(목)에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았음.
- ‘경상남도’는 ‘복지부 공모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탁기관’을 먼저 선정한 후, ‘동수탁기관’과 함께 ‘복지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였음. 그후 복지부 ‘국고보조금 사업’에 최종 선정되자, ‘지정 위탁 동의안’ 형태로 ‘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동의를 받았음.

23) (의안번호 제1091호) 경상남도 권역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5. 5. 15.(목),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참조

- 결론적으로, 서울시는 이례적으로 동 센터의 사업 '예산 형식'을 「모자보건법령」과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및 타 지자체와 다르게 '민간위탁금'이 아닌 '민간 경상 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운영하였음.
- 그러나, '예산' 외 실질적인 '센터 운영'은 '법령'과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라, 그리고 '서울시의 기관 모집 공고문'에서 사전에 명시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 체계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됨.
- 즉, 예산 형식은 '보조금'으로, 실질 운영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한 것이라 판단됨. 다만, '예산 형식'이 '보조금 사업'이므로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는 별도로 받지 않았음.
- 그리고 '이원화된 방식의 운영 구조'는 '23년 7월 개소한 '서울권역 상담센터' 뿐만 아니라 '24년 9월 개소한 '서남권역 상담센터' 역시 동일하게 반복되었음.
- 다만, 2025년 6월 '동 센터'의 '신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되었음. 즉, 서울시도 동 센터 운영 사무를 기존의 '보조금'사업 방식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사업 방식의 전환'은 앞서 언급한 '동 센터' 관련 「모자보건법령」, 「보건복지부 사업 안내」, 타 지자체의 사례 및 '보조금 방식' 대비 '민간 위탁 사업 방식'이 가지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재량권'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 하지만, (1) 왜 동 2개의 센터가 각각 '23년 7월 및 '24년 9월 시점에 관련 '법령'과 '복지부 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는지 또 (2)왜 타 지자체와 다르게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결산'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사료됨.